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-222호

「보험업감독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10일

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이유

IFRS17 도입이 확정(‘21년)됨에 따라 ‘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,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)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가.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) 평가방식 단계적 조정(안 제6-11조의2 및 제6-18조의3)

보험회사의 LAT 산출대상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의해 지급여력비율이 100% 미만인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협약 체결 근거규정을 마련함

나. 지급여력금액 인정범위 확대(안 제7-1조 제1항 바목)

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보험과, 전화 : 02-2100-2963, 팩스 : 02-2100-2947, 이메일: kisoon.kwon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 보험과 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